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근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0
----------	-----

발의연월일 : 2024. 1. 16.

발의자 : 한근수, 김지훈(국), 정현미,
이수련, 김동훈, 전해연,
원주영, 박경원, 김지훈(민),
박은경

1. 제안 이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보완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시장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를 규정(제1장)
- 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의 수립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규정(제2장)
- 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장)
- 라.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4장)
- 마. 주민참여예산제의 재정 및 실무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5장)

3. 전부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5. 관련법령 :

가. 「지방재정법」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남양주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본점이나 지점 영업소 또는 생산시설 등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시에 소재한 교육기관·법인·비영리 민간단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며,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5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

민은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반영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제출
3. 제안된 사업예산에 대한 심의·조정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10분의 1 이상의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제18조에 따른 각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정·예산 등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정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의 이용 배제
5.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5조(회의) ①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18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읍·면·동 관련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
2.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3. 그 밖에 지역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역회의에 상정하는 안건 처리

제19조(구성 및 임기 등) ①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각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지역회의의 위원은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및 각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주민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지역회의) ① 지역회의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

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사회적 약자의 참여 보장) 시장과 읍·면·동장은 위원회 등을 구성함에 있어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포상)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에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지역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로 본다.

제5조(지역회의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에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설치·구성 기준을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세입, 세출의 직접 소요 비용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예산과장 김양균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

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2011.08.04 조례 제98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 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시보,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시장은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교육·홍보 및 토론) ① 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주요사업과 예산편성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의견제출) 예산 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 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공개)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보,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고,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